

우리나라 公服에 관한 研究

金 美 子

I. 序 言	A) 문헌으로 본 공복
II. 高麗의 公服	B) 공복의 형태
A) 문헌으로 본 공복	IV. 結 言
B) 공복의 형태	참고문헌
III. 朝鮮王朝의 公服	

I. 序 言

公服이라하면 일반적으로 조정에 나아갈때 입는 禮服 즉 官員服의 총칭으로 일컬어져서 百官의 여러가지 冠服 즉 祭服 朝服 公服 常服 중에서 어느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와 조선왕조 백관의 관복 중에서 公服만을 고찰한다.

公服의 형태는 曲領大袖(도7.8)이며 幘頭 袍帶 笏 靴로 구성되며 袍의 色과 帶와 笏의 재료에 따라 品階의 等位를 가렸다.

公服을 着用하는 때가 高麗王朝와 朝鮮王朝가 달랐다. 즉 고려때는 百官이 평상 집무복으로도 공복을 착용했는데 조선에서는 朔日 朝會 및 謝辭服으로 착용했으며 明制를 따라 집무복으로는 常服을 착용하였다. 經國大典 國朝五禮儀에 公服과 常服을 제도적으로 구분해서 제정했고 실제로도 구분해서 착용했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에는 大典會通等에 제도적으로 그대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여러종류의 冠服을 모두 갖출 수 없어 차츰 조복 제복 시복은 갖추었

으나 공복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상 公服을 착용해야 할 때는 黑團領으로 대신하였다. 차츰 公服은 그 형태마저도 잊혀져가게 되었고 王陵의 文官石像에 그 흔적이 남았을 뿐이다.

研究對象은 肖像畫 王陵의 文官石像 文獻이며 실물은 한점도 없었다. 보조자료로 宋과 明의 公服을 사용하였다.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되면 수정하고 보충하고자 한다.

II. 高麗의 公服

A. 문헌으로 본 공복

고려의 공복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增補文獻備考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시대 순으로 살펴 본다.

고려사 輿服志에 의하면 “高麗는 개국 초 일이 많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라의 舊制를 그대로 따라 사용하다가”¹⁾ 제 4대 光宗 7년(955)에 “百官의 衣冠은 華制를 따르게 하였다”²⁾ 그러나 형태나 계급에 따른 色등의 자세한 기록이 없었고 4년후 11년(959) 3월에 百官의 公服을 비로소 정했다. “元尹이상은 紫衫이고 中壇卿이상은 丹衫이고 都航卿이상은 緋衫이며 小主簿이상은

1) 高麗史(中) 志 卷第二十六 輿服 (亞細亞文化社 1972 影印版) p. 561

2) 高麗史節要(I)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75, p. 476

緣衫”³⁾으로 四色公服제도 였고 後周의 公服제도 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幞頭가 後周에서 부터 생겼다는 宋史 輿服志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華制란 後周를 의미한다. “고려 초기는 中國 五代(907~960)의 여러 왕조와 北方에서 新興한 契丹과 鼎立하여 미묘한 동향을 나타내던 시기였다. 太祖(918~943)는 초년에 쓰던 고려의 독자적 年號인 天授를 16년에 後唐의 사절이 와서 王을 책봉함과 동시에 後唐 年號로 대체하였고 후당이 망하고 後晉이 선 뒤에는 또 그 年號를 사용했으며 12회에 걸쳐 사절을 파견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왕의 책봉 문제로 2회밖에 사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외교적 관계이지 문물제도까지 따른 것은 아니었다. 3대 定宗(945~949) 3년 後晉이 망하고 後漢(947~950)이 섰으므로 後漢의 年號를 사용했다. 제 4대 光宗(949~975) 2년 12월에 後周(950~960)의 年號를 사용했고 10년동안에 고려에서 사신을 6회 파견했고, 후주에서 4회 來聘했는데 使行 6회중에서 光宗 6년에 2회 10년에 3회로 특정 연도에 집중되었다. 또한 光宗은 雙冀등 投化人에게 높은 官職을 주어 重用하였고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배경이 없는 인물을 등용하여 王權을 강화하였으며 11년에는 稱帝 建元하고 百官의 公服을 제정하고 將相에 대한 숙청을 감행함과 아울러 兵制改革을 했는데 後周 世宗의 것을 본뜬 것이라고 추측해도 무방할 것 같다.

後周가 망하고 宋이 선것은 光宗 11년이지만 13년에야 송과 통하였고 光宗말년(26년)까지 3회의 사절을 파견했고 宋使가 온것은 1회(26년)였는데 이것은 빈번한 내왕이 아니었다”⁴⁾

또한 이때 定한 公服이 新羅와도 宋과도 달랐음을 成宗 원년(982)에 올린 崔承老의 상소문으로도 알 수 있다. 즉“新羅 때는 公卿 百官과 서

인의 의복, 신, 버선이 각기 품색이 있어 公卿·백관은 朝會할 때 公欄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笏을 가졌다. 서인은 文彩있는 옷을 입지 못했으니 귀천 준비를 분별한 때문이었고 백관 스스로 준비했다. 우리 왕조에서는 太祖 이후로 귀하고 천한 것은 논하지 않고 公欄을 마음대로 있었으니 벼슬은 비록 높더라도 집이 가난하면 公欄을 능히 갖추지 못하고 비록 관직은 없더라도 집만 넉넉하면 綾, 羅와 錦, 繡를 사용한다... 文彩있는 물건은 모두 土産이 아닌데도 사람마다 이를 입게 된다면 다른 나라 사신을 영접할 때 百官의 예복이 법대로 되지 않아서 수치를 당할까 염려된다.....백관으로 하여금 조회할 때에는 한결같이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公欄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笏을 가지게 하고.....”⁵⁾

四色公服 제도의 服色을 구분했던 기준을 살펴보면 “元尹은 官等(品)이나 都航卿 中壇卿 小主簿는 官職으로 이해된다. 國初의 官階는 官職과는 무관하게 國家의 統治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어졌다고 생각되며 중앙의 정치와 행정실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인물이라도 그들의 세력차이나 고려왕조에의 협조여하에 따라 다른 등급의 官階를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高位 官階를 받은 인물들은 주로 大豪族이었거나 功臣들이었고 官職의 高低가 반드시 官階의 上下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景宗元年(976) 11월 官吏들의 生計 보장책으로 마련된 始定田柴科에서도 보인다. 紫衫은 文·雜·武 어느 班에도 속하지 않았으나 田·柴의 支給額도 다른 계층을 능가하고.....”⁶⁾ 그런데 이 “田柴科는 人品에 의해 정했고 公服제도를 기본 테두리로 하여 지급액이 정해졌다”⁷⁾(표 1 참조) 이와같이 元宗代의 公服制度를 토대로 하는

3) 고려사(中) p. 565.

고려사절요(I) pp. 77~78, 476

「公服 光宗十一年三月定 百官公服 元尹以上紫衫 中壇卿以上丹衫 都航卿以上緋衫 小主簿以上 緣衫」

4) 李基白編 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981) 「李基白 高麗初期 五代와의 관계」 pp. 135~150

5) 고려사절요(I) p. 98, 458

6) 李基白編 고려광종연구 「金塘澤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 田柴科」 pp. 66~69

7) 고려사(中) 志 卷第三十二 食貨一田柴科 pp. 707~708.

景宗元年十一月 始定職散官 各品田柴科 勿論官品高伍 但以人品定之 紫衫以上 作十八品 文班丹衫以上作十品 緋衫作八品 緣衫以上作十品 殿中司天廷壽尚善院 等雜業丹衫以上作十品 緋衫以上作八品 緣衫以上作十品 武班丹衫以上作五品

<表 1> 公服과 景宗代의 田柴科

공복	紫 衫	丹 衫	緋 衫	綠 衫
班	어느반에도속하지않음	文 武 雜	文 武 雜	文 武 雜
人品	1~18品	1~10品	1~5品 1~10品	1~8品 1~10品

<表 2> 高麗圖經의 冠服

着 裝 者	冠 帽	衣	帶	笏	備 考	
王 服	常 服	烏 紗 高 帽	窄 袖 緋 袍	紫 羅 勒 巾 (間 繡 金 碧)	常 朝	
		幘 頭		束 帶	國 官 士 民 을 接 見 時	
	祭 服	冕			圭	
	公 服		紫 羅 公 服	玉 帶	象 笏	中 國 使 臣 來 到 時
	燕 服	皂 巾	白 紵 袍			民 庶 無 別
令 官 服	紗 製 幘 頭	紫 文 羅 袍	玉 佩 金 帶 魚		太 史, 太 尉, 中 書 令, 尚 書 令	
國 相 服		紫 文 羅 袍	毳 文 金 帶 魚 佩 金		侍 中, 太 尉, 司 徒, 中 書 門 下 侍 郎, 平 章 事, 參 知 政 事, 左 右 僕 射, 政 堂 文 學, 判 尚 書, 吏 部 判 事, 樞 密 使, 副 同 知 院 秦 事 等 官	
近 侍 服		紫 文 羅 袍	御 仙 金 帶 佩 金 魚		左 右 尚 侍, 御 史 大 夫, 左 右 丞, 六 尚 書, 翰 林 學 士, 承 旨 學 士, 祇 待 國 朝 使 命 接 伴, 館 伴 官	
從 官 服		紫 文 羅 袍	御 仙 金 帶		御 史 中 丞, 諫 官, 給 事 侍 郎, 州 牧 留 守 使 副, 閣 門 執 贊, 六 尚 直 官, 都 知 兵 馬, 四 部 護 使, 王 의 世 子, 王 의 兄 弟	
卿 監 服		緋 文 羅 袍 (紫 文 羅 袍) (鄭 刻)	紅 鞞 犀 帶 佩 銀 魚		六 寺 卿 貳, 省 部 丞 郎, 國 字 儒 官, 秘 書 典 職	
朝 官 服		緋 文 羅 袍	黑 鞞 角 帶 佩 銀 魚	木	司 業 博 士, 史 館 校 書, 太 醫 · 司 天 兩 省 錄 事 以 上	
庶 官 服	幘 頭	綠 衣	烏 鞞		自 進 士 入 官, 省 曹 補 吏, 州 縣 令 尉, 主 簿, 司 宰	

官僚體制는 人品을 가미한 景宗代의 始定田柴科로 계속 됐음을 알 수 있고 成宗때에도 계속 유지됐음을 崔承老의 상소문과 “成宗 8년 大學助教였던 宋承演을 國子博士로 9等を 올리고 緋公服을 주었고 經學博士 全輔仁에게도 公服 한 벌을 下賜”⁸⁾ 한 사실과 “成宗 9년 9월에 折衝府別將인 趙英에게 10等を 올려 銀青光祿大夫 · 檢校侍御 · 司憲 · 左武侯衛翊府郎將이라는 官職과 함께

公服 一襲을 下賜한”⁹⁾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후 成宗 14년(995)에 文武의 官階를 定했고 文宗때 29品階를, 忠宣王때는 正一品에서 從九品까지 18품계의 관품을 정했다.

“제11대 文宗 7년(1053) 2월에 탐라국의 왕자가 아들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니 王子中虎將軍을 주고 公服 銀帶 彩段 藥物을 賜하였다”¹⁰⁾

“文宗 32년(1078) 6월에는 宋의 神宗에게서

8) 고려사절요(I) p.113(성종 8년 4월)

9) 고려사절요(I) p.116(성종 9년 9월)

10) 고려사절요(I) p.263, 556.

公服을 賜與받았으니 紫花羅夾公服 一領, 淺色花羅汗衫 一領……등이다”¹¹⁾ 이상의 기록에는 공복의 형태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었으나 고려도경의 기록으로 고려의 공복형태는 宋의 공복과 달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17대 仁宗 원년(1123)에 송의 사신 徐兢은 高麗圖經 冠服條<표 2 참조>에서 “朝廷과 가정에서 입는 옷이 혹 宋의 제도와 다른 것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冠服圖를 그린다”¹²⁾고 했다. 관복도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표 2>를 살펴보면 왕이 중국 사신이 왔을때 착용하는 옷 한가지만 紫羅公服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것은 중국제와 같았기 때문일 것이고 令官外 6계급의 官員服은 色과 문양으로 紫文羅袍, 緋文羅袍, 綠衣로 표현한 것은 송제와 달랐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宋의 神宗이 고려 文宗에게 紫羅公服을 사

여하기도 했으므로 사신을 영접할 때는 중국제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20여년 후인 “제13대 毅宗朝(1146~1170)에 平章事 崔允儀가 祖宗의 憲章을 哀集하고 唐制를 雜采하여 詳定古今禮를 制定하였다. 위로는 왕의 冕服·輿輅으로부터 儀衛門簿에 미치고 아래로는 百官冠服이 실리지 않음이 없어 一代의 制度가 갖추어졌다”¹³⁾ 毅宗朝 詳定 공복제도는 다음과 같다.

문관 4품이상의 服은 紫色이고 紅鞓을 띠고 金魚를 佩하며 象笏을 든다. 常參 6품이상의 服은 緋色이며 紅鞓에 銀魚를 佩하며 象笏을 든다. 九品이상의 服은 綠色이며 木笏을 들며 閣門班武臣 모두 紫色이나 佩魚하지 못한다(이의 자세한 것은 표 3 참조)

또한 王太子 冠禮服도 定했는데 公服이 三加服으로 채용되었다. 즉 “毅宗時 詳定 王太子 加

<表 3> 毅宗朝 詳定 公服 制度¹⁴⁾

품	관	服	魚 袋	帶	笏
文官四品以上 常參六品以上 ※官未至而特賜者不拘此例		紫 緋	金 魚 銀 魚	紅 鞓 紅 鞓	服紫緋者以象
九品以上 閣門班武臣 內侍茶房等官除本服外		綠 紫 紫	不佩魚 不佩魚		服綠者以木 其制上挫下方
西京留守視尙書 副留守視三品以下 各依本品 東南京副留大都護牧副使以上 ※都護牧判官知州事以上衣 帶魚從本品 借紫緋不佩魚 ※知州副使以下 服紫緋者 不得着紅鞓		紫	金 魚		
兩府及承制文武三品以上 四品知制誥翰林東宮侍講 侍講學士 寶文閣直學士 侍制 正四品 知閣門 內侍行頭員茶房侍郎以上 ※官未至而特賜者不拘此例		皂衫		紅 鞓	
公侯伯 宰臣樞密 及方團毬路 文官入座左右常侍御史大夫 翰林學士 承旨 侍臣 三品以上武 官士將軍以上 文武三品及侍臣給舍中丞以上班 文武四品以下常參官 閣門通事舍以下祇候以上			不佩魚	通犀 金玉班犀 金玉班犀 金班犀 犀 金塗銀 金塗銀犀 金塗銀 ※參外官不許着犀	

11) 고려사(中) p. 561

12) 국역 고려도경(민족문화 추진회 1978) 선화봉사 고려도경 제 7권 관복(pp. 68~72) 제19권 민서(pp. 122~124)

13) 고려사(中) p. 561

14) 고려사(中) p. 565

元服儀에 初加 皂羅通頂幘 梘黃衣 再加 帽子 紫羅窄袖衣 三加 幘頭 公服…….”¹⁵⁾

의종조의 공복제도는 “송의 神宗 元豐 원년의 제도”¹⁶⁾와 같다.

이 제도가 공민왕 말기까지도 계속되었음을 朝鮮王朝 太祖때의 어대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즉 “恭愍王이 桓祖에게 試少府尹을 제수하고 紫金魚袋를 내리고…….”¹⁷⁾라고 했다.

B. 공복의 형태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姜民瞻(963~1021) 崔惟善(?~1075)의 초상화와 傳공민왕 부부상과 공민왕비 노국대장공주 正陵 文官 石像 및 해인사 開板 佛說預修十往生七經(1246)中の 판화가 있다.

시대순으로 살펴본다.

강민첨(도 1, 광종 14년~현종 12) 영정은 반신상으로 보물 제588호이며 경북중 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강민첨은 동여진군과 거란군을 격파한 장군으로 현종 10년에 知中樞事兵部尙書에 올랐다.

초상화에서 강민첨은 흑색 복두를 썼는데 끈이 달려 있어서 턱밑에서 매고 있다. 옷깃은 분홍색 曲領이고 길은 짙은 고동색이지만 紫色이 변한듯하다. 袖口에는 옷깃과 같은 색인 분홍색 襖을 대었다. 손에는 홀을 들었다. 裏衣로 백색 청색 백색 3가지를 입었다.

최유선<도 2>은 해동공자 최충의 아들로 1030년(현종 21)에 문과에 급제했고 1041(문종 1년) 어사잡단을 거쳐 형부상서를 역임했고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가 되고 문하시중에 이르는 등 학문이 깊어 많은 후진을 길렀다. 초상화에는 평장사라는 글이 써여 있는 것으로 보아 1041년 이후에 그려진 것일 것이다.

흑색 복두를 썼고 옷깃은 흑색 곡령이며 길은 분홍색이다. 袖口에는 옷깃과 같은 색인 흑색선이 둘러져 있으며 흑선끝에는 가느다란 흰색선이 또 있다. 손에는 홀을 들고있다. 帶는 검정색으로 조금 보이며 백색 裏衣를 입고 있다.



<도 1> 姜民瞻像(樁彬 移模 민속박물관소장)



<도 2> 崔惟善像(명인초상대감)

佛說預修十往生七經은 고종 33년(1246)에 해인사에서 발간하고 조선말기에 後印한 것으로 1980년 출판문화회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 책은 통문관 대표 李謙魯氏의 소장품인데 판화가

15) 증보문헌 비고 卷之七十二 禮考 冠禮.

16) 宋史 志卷第一百六 輿服 五 公服「元豐元年 去青不用 階官至四品 服紫 至六品 服緋 皆象笏 佩魚 九品以上 則服綠 笏以木 武臣 內侍 皆服紫 不佩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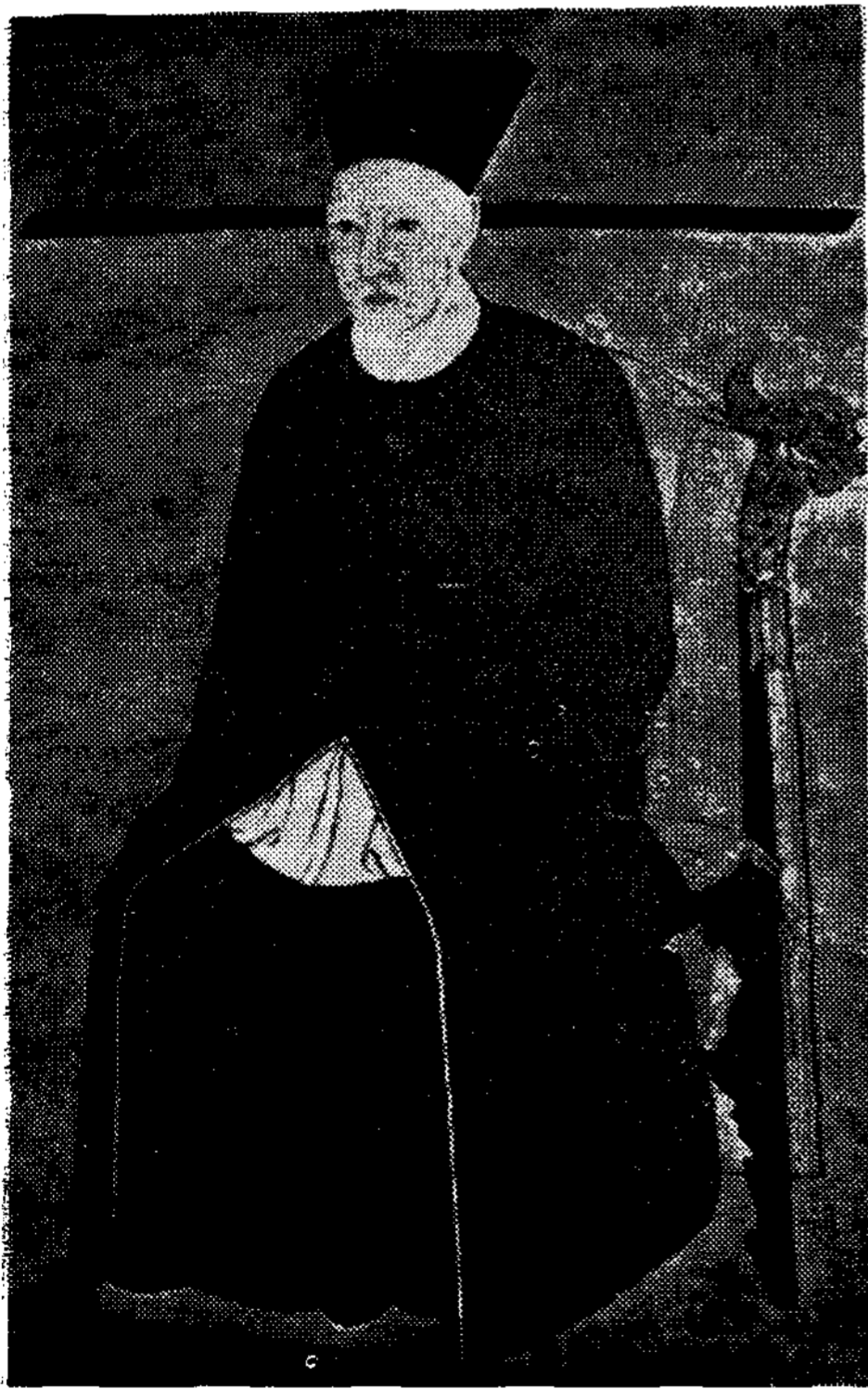
17) 국역 태조강헌대왕실록. I.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p. 18



<도 3> 傳공민왕(1330~1374)부부상



<도 4> 공민왕비노국공주 正陵 文官石像



<도 5> 宋 高宗像(고궁도상선취)



<도 6> 李補像(명인초상대감)

들어있다. 관화중에 관리들이 서있는데 관리들은 복두를 쓰고 曲領大袖(소매넓이가 옷길이의 2/3정도되는 넓이)를 입고 홀을 들었다. 수구에는 둥근 무늬가 있는 다른 천을 들었던 듯 수구에 선이 그어져 있고 둥근무늬가 있다. 그러나

옷깃과 길에는 무늬가 없다. 또다른 페이지에는 變樣圖(死後 審判 場面) 옷깃, 수구에 선이 없는 曲領大袖를 입고 관리들이 서있다.

<도 3>은 공민왕 부부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신상이다. 공민왕은 복두를 쓰고 옷깃

은 흑색 곡령이고 소매는 大袖인데 수구에는 옷깃과 같은 흑색선이 둘러져 있다. 손에는 홀을 들고 대를 띄었으며 신은 끝만 보이지만 흑색화를 신었을 것이다.

공민왕妃인 노국대장공주능 문관석상<도 4>은 복두를 쓰고 곡령대수(소매넓이가 옷길이의 1/2 정도)를 입고 홀을 들고 대를 띄고 화를 신었다 수구에 異色褱를 낸 것같이 선이 뚜렷하지만 주름의 표현일 수도 있으므로 직접 답사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결과 고려의 공복에는 옷깃수구에 異色褱가 있으나 宋의 公服<도 5>에는 없다. 그러나 판화에 이색선이 없는 공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혹시 의종조 詳定 공복제도가 송의 元豐제도와 같았으므로 선 없는 것과 선 있는 것이 병용된 시기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고려공복은 조선왕조 世宗의 五禮儀가 완성되기 전까지 입혀졌을 가능성이 큰데 그 밑받침 자료로 李補<도 6>像으로 짐작할 수 있다. 李補(1396~1486)는 세종의 형으로 효령대군이다. 짙은 고동색 공복으로(曲領大袖) 옷깃 수구 옷단에 청색褱가 둘러져있는데 청색선 밖으로 흑색선이 2중으로 둘러져 있다. 裏衣로 白色窄袖의 옷을 입었고 초록대를 가슴과 허리에 2개 띄고 冠은 익선관과 같으나 뿔(각)이 없다.

Ⅲ. 朝鮮王朝의 公服

조선시대의 冠服제도는 祭服 朝服 公服 常服 時服등 고려보다 세분화되었다. 고려때 公服이

입혀지는 경우에 조선에서는 常服과 時服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복착용이 적게 되었다. 조선의 公服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國朝五禮儀완성까지의 甲論乙駁시기 둘째 五禮儀 의식 이외에 公服이 착용된 실례 셋째 임진 병자亂 이후의 公服이 黑團領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다.

A. 문헌으로 본 公服

조선왕조의 公服制度에 대해서는 世宗實錄 五禮儀(1451년 완성) 經國大典(1460~1469) 國朝五禮儀(1474년 완성) 國朝續五禮儀(1744년) 大典會通(1865)등에 기록되어 있고 公服이 制度化되는 과정과 실제로 시행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歷代王朝實錄, 嘉禮都監儀軌 및 學者들의 文集등에 기록되어 있었다.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시대순으로 살펴본다.

1) 國朝五禮儀 완성까지의 公服

太祖는 건국한 해 12월에 冠服을 제정하고 “1품은 紅袍에 犀帶이고 2품에서 判閣門이상은 홍포에 荔枝金帶이고 3·4품은 靑袍에 黑角革帶에 象笏이며 5·6품은 袍와 帶는 3·4품과 같으나 木笏이며 7품이하는 綠袍에 帶와 笏은 5·6품과 같고 靴는 모두 흑색이었다.”¹⁷⁾ 이것을 “이듬해(1392) 초 1일부터 착용하고 朝賀를 드렸는데”¹⁸⁾ 이 제도는 “明의 洪武 26년(1393) 公服제도와 같다”¹⁹⁾ 그런데 조선왕조에서 明보다 2년 앞서 시행한 셈이 된다. 兩國중 어느쪽이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太祖 4년 10월 “태조가 강사포에 원유관을 쓰

18) 바로 앞책 p. 36, 157 (태조 원년 12월 12일, 무오)

19) 大明會典卷六十一 禮部十九冠服二

文武官公服 洪武二十六年定

在京文武官 每日早晚朝奏事及侍班謝恩見辭則服公服 在外文武官 每日清早公座亦服之

其制 盤領 右衽袍用紵絲或紗羅絹 從宜製造 袖寬三尺

一品至四品 緋袍 五品至七品 靑袍 八品九品 綠袍

未入流雜職官袍笏帶 與八品以下同

幘頭 漆紗二等展角 長一尺二寸 雜職官 幘頭 垂後

復令展角不用垂帶 與入流官同

笏 依朝服爲之

腰帶 一品玉或花或素 二品 犀 三品四品 金荔枝

五品以下 烏角

鞮用皂

鞮用靑革 仍垂撮尾於下

凡文武官花樣 如無從織買用素隨宜

고 太廟에 奉審할때 백관들은 公服을 입고 인도 했으며”²⁰⁾ “태조가 세자에게 왕위를 전해 줄때 좌정승과 우정승을 부르니 공복을 갖추어 입고 들어왔다”²¹⁾

太宗때는 공복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착용하고 있었다. 즉 “태종 원년 윤 3월에 參判義興三軍府事인 朴子安과 簽書義興府事 李詹등이 禮部의 咨文을 싸가지고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올 때에各司에서 公服을 갖추어 입고 교외(郊外)에서 맞이 했으며”²²⁾ 4월에는 王이 宗廟에 갔다가 환궁할 때 관료들이 공복을 입었으며”²³⁾ 6월에 明廷사신을 맞이 할때 “왕은 紗帽와 團領을 입었고 百官은 公服을 갖추어 입고 宣義門밖에 나아가 영접하였다”²⁴⁾ 또한 16년 정월 丙午에는 冠服色을 두고 백관의 조복과 제복을 마련하였다.

世宗은 국가儀式인 五禮儀(吉禮 嘉禮 賓禮 軍禮 凶禮)를 1451년(세종 31년) 완성시켰다. 그 서문에 “...太宗이 許稠에게 명해 길례의 序例와 의식을 찬술했다.....세종은 鄭陟과 卞孝文에게 명하여 가례 빈례 군례 흉례의 예를 찬정했는데 이미 本朝에서 시행하던 典禮와 고사를 취하고 唐宋의 옛 제도와 明의 제도를 취했는데 그것의 버리고 취함과 줄이고 보탠것은 모두 임금의 결단을 받았다”²⁵⁾고 밝혔다. 세종실록 五禮儀가 완성되기 전의 公服착용 실례와 국조오례의(1474, 성종 5) 완성까지의 착용 실례를 살핀 후에 세종실록 5례의와 국조 5례의를 분석한다.

세종 5년 예조에서 “원단 사직 종묘에 제사지낼때 誓戒할 때 모두 공복을 사용하자고 禮曹에서 啓하므로 그대로 따랐고”²⁶⁾ “王女 下嫁儀 중 親迎때 부마가 公服을 입고 대궐에 나아가 肅拜하며.....”²⁷⁾ “왕세자의 생신을 축하하는 의식때

宗室과 文武群官이 公服을 입으며 세자도 公服을 입었고.....”²⁸⁾ 또한 임금을 뵈때 大朝會 朔望朝會 冬至 正朝 朝會 謝恩할때의 王 王妃 王世子 群臣이 어떤 冠服을 착용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즉 “신하는 공복으로 임금을 뵈고 왕은 常服으로 받으니 온당하지 못하다 무슨 옷을 입어야 옳겠는지 옛 제도는 어떤가? 입어야 할 제도가 없다면 여러 신하들도 時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겠다. 다만 초하루와 보름의 朝賀 의식만은 평상시 朝見하는 예의와 다르게 하는 것이 어떤가?”²⁹⁾ 이듬해 8년에는 왕세자와 백관의 大朝會와 正朝와 冬至의 조회 및 임금을 알현할때의 冠服에 대해서 예조에서 계하기를 “.....당과 송의 제도에 따라 왕세자는 대조회에서는 조복을 착용하고 정조와 동지의 조회에 中宮께 하례를 올릴 때에는 조복을 착용하고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을 때는 공복을 착용하며 여러신하는 대조회에서는 조복을 착용하며 임금께 알현하거나 사은 또는 부임전에 배사하러 뵈을 때에는 공복을 착용하며 정조와 동지의 조회에서 中宮에게 하례를 올릴 때에는 조복을 착용하며 왕세자에게 하례를 올릴 때와 中宮과 왕세자에게 謝恩할 때에는 공복을 착용하게 하소서³⁰⁾했다.

이때 제정된 대로 시행되었음을 다음으로 알 수 있다. “왕이 가로되 음력 초하루(朔日)마다 公服을 입고 조회하는 것은 좋은 법인데 비나 눈오는 날에 더러워질까 염려되니 四孟朔(1월 4월 7월 10월)에만 입으면 어떨가.....대신 조복을 입고 함이 어떨가 이에 許稠가 아뢰기를 중국(明)은 朔望(초하루와 보름)에 다 입는데 우리는 唐의 제도를 쫓아 가장 간략히 한 것입니다. 삭일에도 입지 않으면 그 옷을 무엇에 쓰겠

20) 태조강헌대왕실록(Ⅰ) p.81(태조 4년 10월 초 4일)

21) 태조강헌대왕실록Ⅱ, p.293(태조 7년 9월 5일, 정축)

22) 국역 태종 공정대왕 실록Ⅰ.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4, p.11,51(태종 원년 윤 3월 15일, 갑진)

23) 바로 앞책 p.58(태종 원년 4월 4일 임술)

24) 바로 앞책 p.75(태종 원년 6월 12일 기사)

25) 세종 장헌 대왕 실록 20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3) p.5

26) 세종 장헌 대왕 실록 3권 p.331(세종 5년 7월 3일)

27) 바로 앞책 10권 pp.381~382 (세종 17년 1월 23일)

28) 바로 앞책 19권 p.100 (세종 30년 10월 11일)

29) 조선왕조실록 卷 2 국사편찬위원회 영인출판 1973. 탐구당) p.708(세종 卷 30 7년 乙巳十二月庚寅)

30) 세종장헌대왕실록 제 5 권 pp.167~170(세종 8년 2월 26일)

읍니까? 立法한지 오래지 않아 고치면 미안하게 여겨집니다”³¹⁾

세종 28년에는 “옛날 士大夫들이 왕에게 조회할 때는 반드시 朝衣를 입었는데 本朝에서 이제도를 따라 遵用하여 大朝會에는 朝服을 입고 초하루날의 조회에는 公服을 입고 그 나머지 모임과 朝啓 및 東宮에게 朝參하는 날에는 그대로 常服을 입게 되니 상복이 허술한 사람이 많이 조회할 때만 입는 상복 하나를 따로 만들어 당상관은 외국산 紗羅 段子를 허용하고 당상관중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과 3품 이하는 본국의 布物을 검게 물들이되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고 여름에는 모두 苧布와 麻布를 通用하고 冠帶도 더럽고 파손된 것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³²⁾는 예조의 말에 여러 신하들이 반대했다.

文宗 원년 신숙주가 아뢰기를 “세자 책봉후 백관이 朝服으로 陳賀하는데 朝服은 임금에게 朝會할 때 입는 옷이므로 동궁때는 公服을 입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자 文宗은 다시 상고하여 시행하겠다고”³³⁾하였다.

世祖 2년에는 공복이 冠禮服(三加服)으로 추천되었다. 즉 直提學 梁誠之는 “宗室로 부터 士大夫의 子弟가 13세가 되면 관례를 행하게 하여 笠子 頭巾 紗帽로써 三加를 하는데 후 紗帽 幘頭 梁冠을 사용하며 그 未冠者는 입학을 허락하지 않게 하고……”³⁴⁾ 이후 國朝五禮儀에 文武官冠儀의 3가매의 복장으로 시행되었다. 세조 5년에는 새로 제정한 儀注에 문무관의 조복과 제복 착용시기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고 고쳤으니 “……지금 諸司職掌을 상고해 보니 문무관의 조복은 경사스럽고 좋은 大事 정월 초하루 동지 聖節 및 頒降 開讀 詔赦 進表 傳制에는 이를 입게 되고 공복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회하고 奏事할 때나 侍班 謝恩 見辭할 때에 이를 입게 된다 했으며 또 지금은 奏聞事의 聞見事目에는 초하루와 15일에 朝賀할 때에 황제는 皮弁을 쓰고 皂袍를 입으며 황태자는 익선관과 홍포를 갖

추며 여러신하들은 공복을 입는다고 했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중국 조정의 제도와 본국에서 이미 시행한 格例에 의거하여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경사스럽고 좋은 大事 동지 정조 성절 영조 반강교서 탄일 拜表외에 초하루와 15일의 조하 및 헌사 사은 복명할 때는 모두 공복을 입도록 하소서 여러 신하들이 이미 공복을 입는다면 왕세자도 면복을 착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익선관과곤룡포는 便服이므로 조하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사스럽고 좋은 대사 정조 동지 성절 영조 반강교서 탄일배표에는 면복을 갖추고 삭망의 조회하는 날에는 공복을 갖추소서”³⁵⁾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 1년(1469)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공복제도<표 4 참조>는 태조 원년의 제도와 같고 말기의 大典會通에서도 같다. 같은 해에 紅色 禁令이 있었지만 “公服 조복 제복 및 妓工人의 冠帶는 紅色을 계속 사용하도록”³⁶⁾ 금지령에서 제외되었다.

<表 4> 經國大典 大典會通 公복제도

계	급	袍	帶	笏	관	신
一品		紅袍	犀帶	象	幘頭	黑皮靴
二品以下正三品以上		紅袍	荔枝金帶	象	"	"
從三品以下四品		靑袍	黑角帶	"	"	"
五六品		"	"	"	"	"
七八九品		綠袍	"	"	"	"
향리		"	"	"	"	"

표 5는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의 의식에 따른 공복 착용자 표이다.

2種의 오례의중 공복 착용자가 들어있는 의식 32종을 비교해 본 결과 몇개 의식 이외에 큰 차이가 없었다. 길례의 7가지 의식 중에서 공복 착용자의 직책은 陪祭之官 王世子 文武侍衛官 館官 學官이며 가례의 國婚(納妃·嬪儀)의 2가지 의식에서는 內直別監(執事者) 僕·主行事者 使者이며 王子 王女 一品이하의 婚禮에서는 大

31) 바로알책 제10권 p.193 (16년 5월 1일)

32) 바로알책 제17권. p.349(28년 1월 23일)

33) 문종실록 제 2 권(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p.207 (즉위년 7월)

34) 조선왕조실록 卷 7 p.121B~123 A장 (세조 卷三, 2년 丙子 三月 丁酉)

35) 바로알책 卷 7, p.347 (세조 卷 17, 5년 己卯 九月 丙戌)

36) 바로알책 卷 8, 400B~401 A장 (예종원년 己丑 7월 庚寅)

〈表 5〉 儀式에 따른 公服 착용자(세종실록 오례의, 국조오례의)

	儀 式	職 責	世宗實錄五禮儀	國 朝 五 禮 儀
大 祀	親祭祀稷儀 親禘宗廟儀 四時及臘親享宗廟儀	陪祭群官 陪祭之官 陪祭之官	公 服 公 服 公 服	朝服
中 祀	親享先農儀 視學酌獻文宣王儀 王世子釋奠文宣王儀 有司釋奠文宣王儀	陪祭之官 王世子 文武侍衛官 館官·學官 館官·學官 館官·學官	公 服 公 服 公 服 公 服	公服(陪享宮官同) 公服
納 妃 儀	納 妃 儀 納 采 妃氏家 受納采 納 徵 冊 妃 命使奉迎	內直別監 二人 使者 以下 賓·主·行事者 內直別監 二人 使者 以下 內直別監 二人 內直別監 二人	公 服 改公服出 公 服 公 服 改公服出 公 服 公 服	執事官二人：公服 改公服出 公 服 執事者二人：公服 改公服出 執事者二人：公服 執事者二人：公服
納 嬪 儀	納 采 嬪氏家受納采 納 徵 親 迎 冊嬪前一日 親 迎 親 迎 婿朝見 親 迎	殿 下 主人以下 內直別監 二人 使者以下 王世子 主人·賓者 內直區監 二人 大 君 婿 婿 婿 有職者	冕 服 盛 服 公 服 改公服 改 公服 公 服 公 服 盛服(公服) 公 服 公 服 釋公服 公 服	冕服 使者改公服 賓·主·行事者：公服 執事者二人：公服 改 公服 宮官服：具公服 公服 主婦：禮衣 執事者：公服 盛服(公服) 公 服 釋公服
冊 封	冊妃儀 冊王世子儀 百官賀王世子 冊王世子嬪儀	內直別監二人 內直別監二人 왕세자, 종친, 문무백관 內直別監二人	公 服 公 服 公 服 公 服	執事者：公服 公 服 執事者：公服
賀	正至百官朝賀儀 王世子正至百官朝賀儀 正至王世子百官朝賀儀 朔望王世子百官朝賀儀 使臣及外官朔望遙賀儀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令史二人 內直別監 宮 官 宗親·文武百官 王世子 樂止書史二人 樂止展箋官二人 庭從入殿庭者 宗親·文武百官 衆 官 入庭使臣 內直別監二人	綠公服 公 服 公 服 公 服 公 服	文官：公服 武官：器服 公 服 綠公服 公 服 公 服 公 服 公 服 公服(無：常服) 司香二人：公服

禮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內直別監	公服	司香二人：公服
	迎詔書儀	內直別監	公服	司香二人：公服
	迎勅書儀	內直別監	公服	司香二人：公服
	拜表儀(拜箋儀)	內直別監	公服	司香二人：公服
	傳香儀	宗親·文武百官	朝服(使者送)	捧表官：公服
	王世子與師傅賓客相見儀	內直別監	公服	文官：公服 武官：器服
	教書頒降儀	師傅·貳師·賓客	公服	公服
	文武科放榜儀	王世子	公服	展教官二人：公服
	生員放榜儀	內直別監二人	公服	公服
	王世子冠儀	舉人	公服	執事者二人：公服
	文武官冠儀	內直別監 二人	公服	公服(四館)
	王世子入學儀	侍臣·三館	公服	公服
		禮曹正郎	公服	公服(執事者)
		內直別監 二人	公服	公服

君 婿 有職者이며 冊封의 4가지 의식에서는 내직별감 왕세자 종친 문·무백관이며 賀禮의 5가지 의식에서는 내직별감 令史 宮官 宗親 文무백관 왕세자 衆官 樂止書史 樂止展箋官 庭從入殿庭者 入庭使臣이며 冠儀이외 11가지 의식에서는 내직별감 司香 執事者 展教官 師傅 式師 賓客 舉人 侍臣 三館 四館 禮曹正郎 宗親 文·무백관 博士 教書官 展箋官이었다.

2) 五禮儀 의식외의 公服착용 實例

成宗 18년 柳子光은 赴京子는 紗帽와 黑衣외에 조복과 공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자고 啓를 올리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 “중국은 朝班때 공복 조복을 착용하니 우리도 싸 갖고 가서 그들과 같은 차림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왕은 양관과 복두를 운반하는 폐가 많다고 허락하지 않았다”³⁷⁾

성종의 명에 따라 성현등이 24년(1493)에 완성시킨 樂學軌範에 공복 그림이 있어 조선왕조의 공복형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명의 공복과 같다. “絳公服은 雅樂登歌의 導唱樂師가 임는 것이다. 紅綃衫은 紅綃로 만들며 이것이

강공복이다. 그 형태는 녹초삼과 같다. 綠綃衫은 綠綃로 만들며 右坊樂師가 임는 것이다”³⁸⁾

成倪 찬용재총화 I에 “궁중에서 왕자 왕녀가 태어나면 산실에 깔았던 거적자리를 치우는 예(掩草之禮)를 하는데 예물은 王子일 경우 幞頭 袍 笏 烏靴 金帶이며 王女는 釵 簪 背子 鞋 履였다”³⁹⁾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王子의 예물은 公服이다.

연산군 8년에는 세자 책봉후에 신하들에게 조하를 받을 때 입을 옷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세종과 德宗은 공복을 착용했으므로 전례에 의하면 紅袍와 복두인 공복을 착용해야 되나 五禮儀에는 具服(六染冠 絳紗袍)으로 되어 있고 성종도 오례의대로 착용했으니 연산군의 세자가 강보를 겨우 면했으나 조복을 갖추도록 했다”⁴⁰⁾

尹國馨의 甲辰漫錄에 의하면 公服을 學士도 입었었다. 즉 “정축년(선조 10년)에 나는 冠帶를 갖추고 金鑾門을 나서서 西門으로 향하였다. 成洛 학사는 公服을 입고 報漏門에 앉아서 장막 틈으로…….”⁴¹⁾

이상과 같이 공복은 관례복, 악인복, 학사복, 가례 길례 등 많은 경우에 착용되다가 임진란으

37) 바로앞책 卷 11, pp.192 (성종 18년 丁未 2월 戊戌)

38) 국역악학계범 II, 악학계범 卷九 冠服圖說 민족문화추진회 1980, pp.176~177.

綠綃衫：綠綃衫右坊樂師所着絳公服雅樂登歌導唱樂師所着 衫以綠綃縫造 紅綃衫制同紅綃衫即絳公服也.

39) 成倪찬 국역 대동야승(I) 용재총화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pp.56~57.

40) 국역연산군일기 (민족문화 추진회 1975), pp.350~351 (연산군 8년 8월 乙丑)

41) 성현찬 국역 大東野乘 XIV, pp.19

로 인해서 공복을 포함한 모든 관복이 없어졌다.

3) 壬辰, 丙子亂 이후의 公服

공복이 복구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宣祖實錄”에⁴²⁾ 많지만 성호사설에 요약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士大夫는 朝服 公服 時服 常服 祭服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모두 없어졌다……무술년(선조 31년)후에 明의 원병이 오고 富商들이 물품을 많이 가지고 오니 堂上官의 燕服에 深초록을 사용했고 유생들도 이를 착용하였다. 기해년 무렵에 조정에서 冠帶제도를 회복할 것을 議定하여 黑色옷을 착용했으니 중국 사람들의 복색을 모방한 것이다. 庚子 辛丑年(선조 34년)에 다시 淡紅色을 착용했으니 이것이 원래 우리 나라의 옛 제도였으며 얼마후에 朝服 祭服 時服은 모두 복구되었으나 오직 公服은 복구되지 않았고 새로 급제한 사람만 입고 공복을 입을 때에는 時服으로 대신했다”⁴³⁾

이와 같이 公服대신 黑團領을 착용하게 되었으며 時服과 常服의 차이는 흑단령이나 홍단령이냐의 차이이므로 시복과 공복이 복구되는 과정을 實錄에서 찾아보면 宣祖 31년 “大小朝官이 모두 7년간이나 戎服을 착용하여 上下의 分別이 없으므로 내년 2월말일까지 흑단령을 착용하면 中華制에 따르는 것이다”⁴⁴⁾ 이후 준비기간이 연장되어 “京中은 9월 1일까지 外官은 9월 20일까지 준비할 수 없는 계층과 軍人과 武官은 착용하고 있었던 戎服도 무방하다 했고”⁴⁵⁾ 2년후인 34년 8월에 다시 冠服色에 대한 논의가 있은후 常服(團領)色을 淺紅色으로 하여 6월 27日 祥祭後 變服時에 착용하되 深紅色을 착용하는 자는

法司에서 糾檢토록 했다”⁴⁶⁾ 이때(선조 34년 6월)의 時服은 黑團領이므로 성호사설의 시복도 흑단령이 되겠다. 이후로 계속 공복대신 黑團領을 착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公服과 黑團領을 같은 것으로 알게 된 것 같다. 즉

이익의 성호사설에 “우리 증조부 贊成公과 그 長子 判書公의 畫像을 宗家에 모셨는데 그 公服이 皂衫團領에 窄袖인데 요사이 常服襦衣와 같아서 考古學者에게 물었으나 또한 아는자가 없었다……이 畫像은 光海때에 그린 것으로 임관 초기에는 다를 듯하니, 갑진만록에 이른바 「얼마 후에 복구했다」는 것은 흑 광해군 즉위 이후의 일을 가리킨 듯하며 화상을 그릴 때에 오히려 임란중의 제도를 모두 고치지 않은것은 아닐가? 그 전말을 상세히 실려 다시 후일의 상고하는 자를 기다리는 바이다”⁴⁷⁾

여기서의 요사이란 英祖때를 말함이며 이때는 “黑團領이 常服”⁴⁸⁾으로 되었었다. 이렇게 公服과 흑단령을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형태를 몰랐으나 국가의 婚禮인 嘉禮때는 公服을 濟用監에서 만들어 제공하였다.

昭顯世子嬪 姜氏 嘉禮都監儀軌(인조 5년 1627)에 의하면 “傳敎官 典儀協律郎外 正副使 및 僮主 各差備官 執事 行事者를 위해 紅衣四件金帶四件 黑衣九件 幘頭 十三件을 만들었고 笏은 各自가 준비했다”⁴⁹⁾ 仁祖 繼妃를 맞아 들이는 國婚(인조 16년)을 앞두고 禮曹에서 啓言하기를 “……百官은 朝服 執事官은 흑 公服을 착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조복 공복을 줄지에 구비하기 곤란하니 正·副使外는 모두 흑단령을 착용할 것을 요청하여 실시하기도 했다”⁵⁰⁾ 이때 正 副使

42) ·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戊午 「중국 勅使를 맞이하는데 조신의 冠服이 不備하여 戎服으로 行禮할 것을 허락 하였고…」

· 선조실록 선조 29년 3월 己巳 「임란으로 의관이 탕진되어 응복을 착용하고…」

· 선조실록 선조 32년 1월 戊子 「대소 朝官이 2월 말일까지 冠帶를 복구 하도록 傳敎를 받았다…」

· 주 44. 주 45. 참조

43) 李翼 星湖僿說 제15권 인사문 임진란후공복 국역판 Ⅲ, pp.106.

44) 선조실록 선조 31년 12월 己巳

45) 선조실록 선조 32년 8월 壬寅, 甲辰

46) 선조실록 선조 34년 6월 甲戌

47) 성호사설 pp.106

48) 영조실록 영조 21년 6월 辛亥 「則常服乃是今所謂黑團領也…」

國朝續五禮儀序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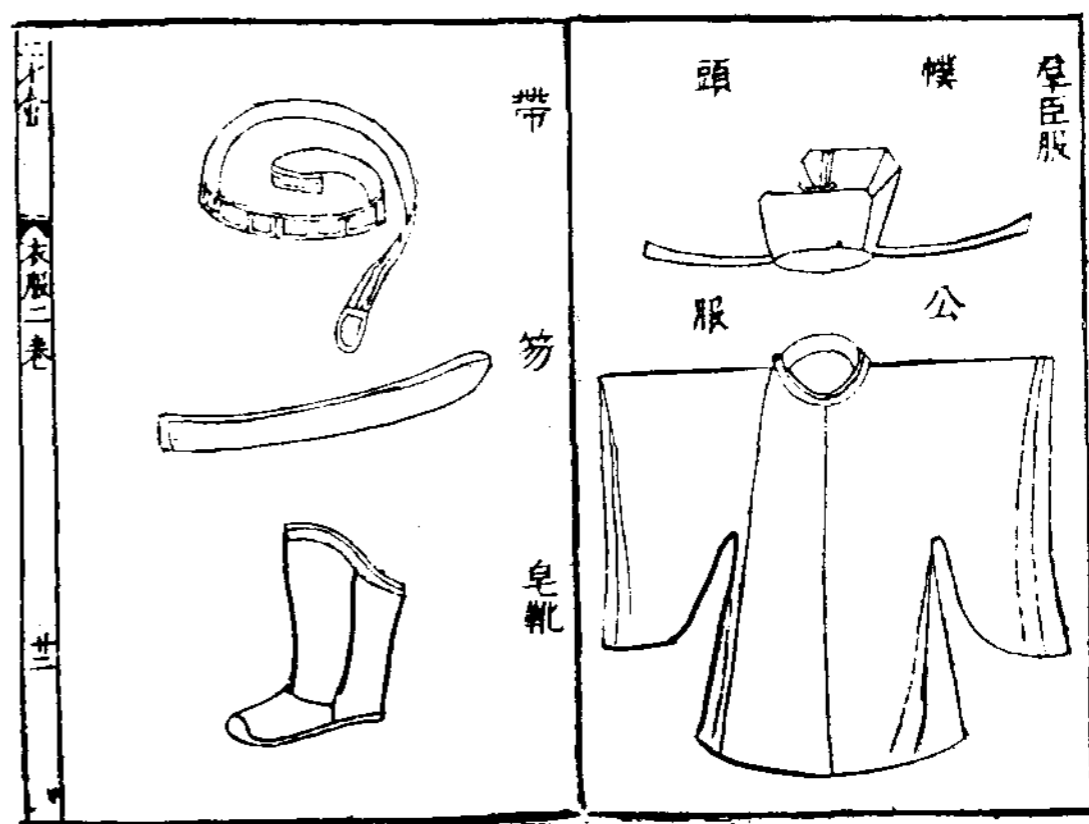
49) 昭顯世子嬪 嘉禮都監儀軌 규장각본. pp.33~34

50) 인조실록 권 37 16년 10월 戊戌 pp.24

와 主人과 僕者 4인이 公服을 착용했음을 세자빈 가례를 위해 도감에서 啓한 顯宗實錄으로 알 수 있다. “가례도감에서 納采 納徵등의 行禮時 正使이하 諸執事 主人 僕者가 착용할 공복과 王世子 親迎時에 宮官이 착용할 공복을 준비해야 하는데 戊寅年(인조 16년) 가례騰錄에는 正·副使와 主人 僕者는 공복을 착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흑단령을 착용하였는데 辛卯年(현종 2년 世子嬪册封)에는 흑단령은 苟簡하다하여 공복을 措備할 것을 稟啓하였으나 그 비용이 막대하여 不可하므로 正·副使 主人 僕者이외 諸執事는 모두 흑단령을 착용했으니 이번에도 辛卯年의 예에 따라 行禮토록 稟啓하여 上의 允허를 받았는데”⁵¹⁾ 그대로 실시됐음을 肅宗世子嬪 光州金氏 仁敬王后 嘉禮都監儀軌(현종 12년 1671)로 확인할 수 있다. 즉 “正副使 및 主人 僕者는 公服이고 各差備官은 黑團領……”⁵²⁾

英祖(26년 1750)의 命에 의해 박문수등이 편찬한 國婚定例(大小婚儀가 사치에 흘러 낭비가 심하므로 국민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펴냄)에 “王妃 王世子 嘉禮時 正使 壹員 副使 壹員 主人 壹員은 紅方絲紬公服과 冒羅幘頭와 也字犀帶와 黑靴子이며 僕者 壹員은 草綠鼎紬 公服과 冒羅幘頭와 角帶와 黑靴子”⁵³⁾였다. 純祖 19년(1819) 文祖神貞後 가례도감의제는 國혼정례와 꼭 같았고 憲宗 3년(1837)의 憲宗孝定后 의제는 國혼정례와 극히 일부만 달랐고 안감이 첨가됐었다. 즉 正使 副使 主人의 公服의 內拱은 藍方紗紬, 僕者의 公服의 內拱은 藍鼎紬이며 副使의 帶가 也字金帶로 國혼정례의 也字犀帶와 달랐고 다른 것은 다 같았다.

高宗 19년 純宗純明后 가례도감의제(1882)에 主人과 賓者가 公服을 입는다고 기록되었다. 國婚外의 의식으로는 “親臨頒教陳賀儀 때 敎書官 展箋官 각 2인이 公服을 착용하도록 규정⁵⁴⁾하였고 영조 39년은 “옛 제도대로 공무 집행시에 臺



<도 7> 君臣 公服(三才圖會)



<도 8> 朴堧夫婦像

諫이 公服을 입도록 命했으며”⁵⁵⁾ 41년에는 “王孫 冠禮時 再加服으로 幘頭 公服이 착용되었고”⁵⁶⁾ 이후로는 왕족의 관례복으로 착용되지 않았다.

B. 공복의 형태

형태를 알 수 있는 유물 자료는 한점도 없으나 초상화, 악학계법의 樂人의 絳公服<도 9> 王

51) 顯宗 실록 권 23 12년 2월 己亥 p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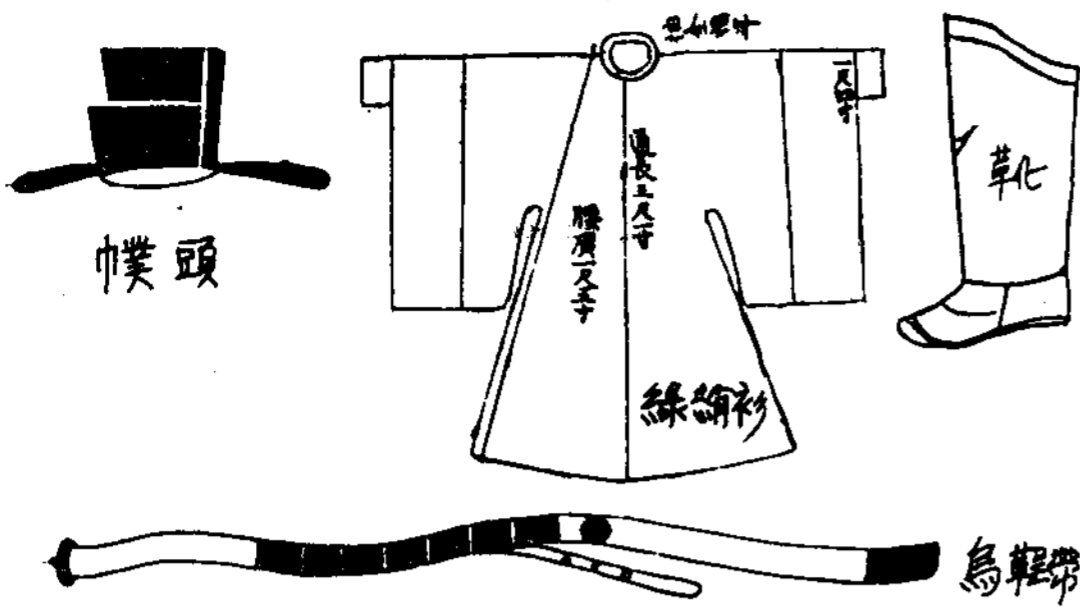
52) 肅宗 세자빈 光州金氏 仁敬王后 가례도감의제, 규장각본 pp.46

53) 國婚定例 乾 卷之二. 규장각본

54) 國朝續五禮儀(영조 27년)

55) 英祖實錄 英祖 卷一百二 三九年 癸未 9월 甲寅

56) 증보문헌비고 卷之 72. 禮考(冠禮 婚禮)



<도 9> 右坊樂師, 導唱樂師服(악학계법)

陵의 文官石像이 있다.

조선의 공복 형태는 옷깃은 둥글고(曲領) 右襟이며 넓은소매(大袖)이고 길며 두루마기 무와 같고 옷길이는 매우 긴데 明의 공복<도 7> 형태와 같았다. 고려의 공복에는 옷깃과 袖口에 異色襟이 둘러져 있었으나 조선의 공복에는 異色襟이 없다.

조선중기 이후에는 공복이 團領으로 대치되었음을 樂人服과 文官石像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문헌과 일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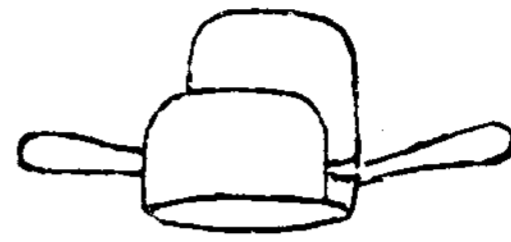
<도 8>은 朴堧부부상으로 앞에는 큰 상이 차려져 있다. 朴堧(1378~1458 세조 4년)은 雅樂의 체계를 세운 大樂才로 악기의 調律, 整理를 했고 아악이외의 음악을 인정치 않은 엄격한 유학자였다. 朴堧은 복두를 쓰고 曲領大袖인 공복을 입고 홀을 들고 있다. 복두의 각의 길이가 어깨까지 오는 긴것이고 복두의 앞부분은 모지 지 않고 사모와 같이 둥글다.

<도 9>는 右坊樂師의 幞頭 烏鞆帶 靴 綠綃衫인데 雅樂登歌의 導唱樂師가 입는 絳公服의 형태와 같으므로(주 38 참조) 곧 綠公服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明의 公服<도 7>과 같다. 絳公服은 세종 14년 12월에 副典樂服으로 이미 정해졌었다.

綠綃衫은 純祖 29년 己丑 進饌儀軌에서 典樂의 服(冒羅幞頭, 綠綃衫, 烏鞆帶, 黑皮靴)이었고 高宗皇帝 進宴儀軌에서도 典樂服<도 10>이었고 2종의 의궤의 그림과 구성이 꼭 같았다. <도 10>은 <도 9>와는 다른 團領인데 이것은 임진, 병자란 이후 公服대신에 團領이 입혀졌을 때 典樂服에도 똑같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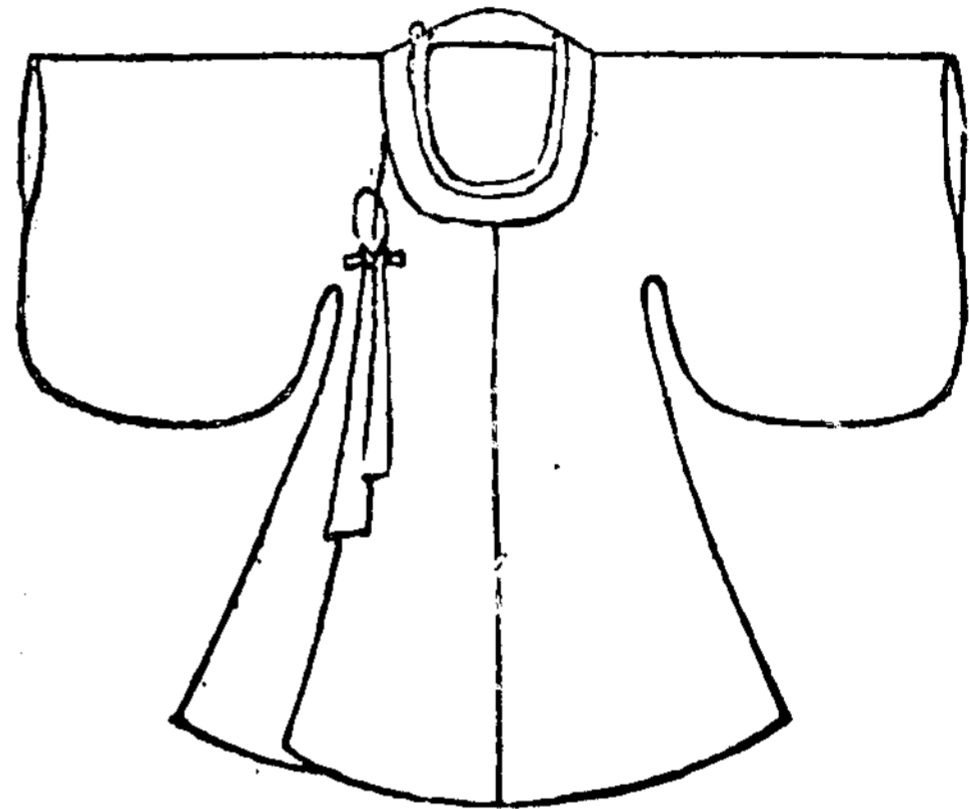
복두는 冒羅幞頭라고 進饌儀軌에서 부르며 紗

頭幞羅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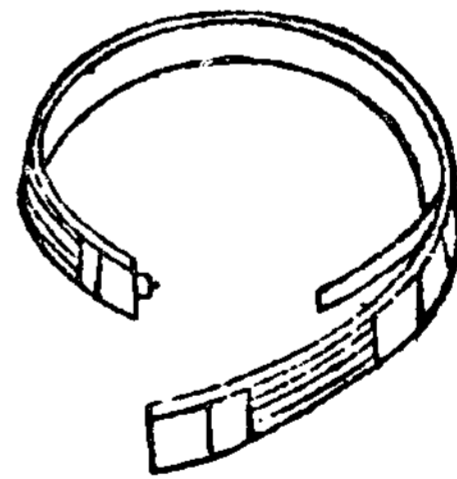


典樂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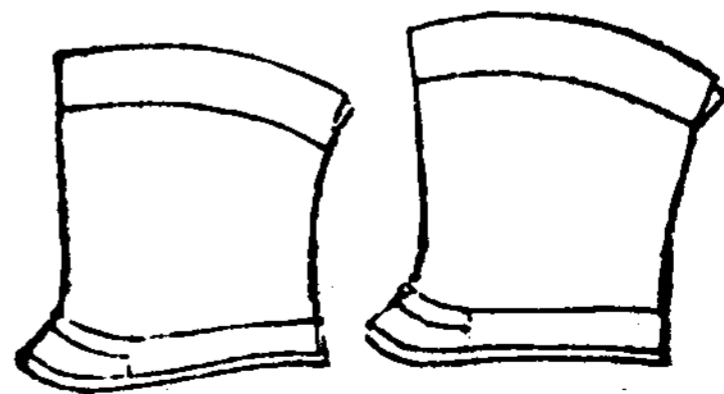
衫綃綠



帶也烏



靴黑



樂工舞童同

<도 10> 高宗황제 進宴儀軌



<도 11> 太宗陵 文官石像(權容玉제공)

<도 13> 英祖妃 貞聖王后陵 文官石像(權英玉제공)



<도 12> 肅宗陵 文官石像(權容玉제공)

靴는 신목이 짧아졌다.

<도 11~도 13>은 文官石像인데 公복의 초기 형태부터 말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太祖부터 純宗까지의 王과 王后陵중에서 25개 陵이 公복을 착용한 문관석상”⁵⁷⁾이므로 고찰한 결과 변화는 별로 없었다.

袍의 옷깃은 과임이 적은 曲領이었고 右襟이며 옷길이는 靴의 끝부분만 보이도록 길고 소매 넓이는 옷길이의 1/2~2/3로 매우 넓고 주름 표현을 보아 매우 길었고 수구는 막힌 곳 없이 밑 끝까지 터졌으며 무는 두루마기 무와 같이 막혔다.

그런데 肅宗 景宗妃 端懿王后, 英祖 英祖妃 貞聖王后<도 13> 憲宗의 陵은 公服형태에 團領의 뒤로 돌아간 무가 첨가된 것이었다. 숙종릉은 단령무의 윗부분만<도 12> 보였지만 나머지 4陵의 무는 단령무 즉 옆트임이 있는 여분의 무가 뒤로 접혀진 표현이 선명했다. 이것도 兩亂 이후 公복의 형태를 잘 몰라 잘못되었다고 생각

帽같이 둥글었다.

帶는 烏鞆帶가 烏也帶라고 불렀고 형태는 비슷한데 鞆을 뒤로 늘릴 수 있도록 아주 길다.

57) 權容玉 “朝鮮王朝 王陵 文人石像의 服飾形態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위의 논문의 실측표와 사진을 참고하였는데 권용옥과 다른 의견이 약간 있다.)

58) 成宗實錄 卷十二年 辛卯 5월 庚寅

된다. 조선초기 成宗때의 “公服·朝服 祭服은 세종때에 濟用監에서 만들어 官司에 조복 제복을 보관했다가 이제까지 입는데 公服은 私家に 보관하므로 전하는 것이 없다……”⁵⁸⁾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도 잘못될 가능성은 많다고 본다

복두의 형태는 악학계범<도 9>의 복두와 같았고 뒷부분에는 脚의 표현을 했는데 4가지로 했다. 즉 각을 교차시킨것<도 11> 위로 올린것<도 12> 등부분까지 내린 것, 뒤에서 앞으로 그린것<도 13>등으로 평평하게 옆으로 펼친다면 어깨까지의 길이 혹은 약간 더 긴 정도의 길이였다.

帶는 鞵이허리 뒤로 길게늘어지는 鞵帶(也帶)로 花紋이 있었다(明나라는 鞵은 革을 사용하고 靑色이었다)

笏은 윗쪽은 둥글고 아래는 모가졌으며, 靴는 끝부분만 보였다.

IV. 結 言

公服이란 어휘는 三國과 통일신라때도 있었으나 中央集權 체제가 이뤄졌다는 뜻으로의 官員服의 개념이어서 高麗와 朝鮮王朝의 公服인 曲領大袖와는 그 형태가 달랐다. 고려에서는 공복을 평상집무복으로도 착용하였으나 조선에서는 常服과 時服이 대신하게 되어 공복 착용빈도가 줄었다. 임진·병자亂이후 公服이 복구되지 못하고 黑團領으로 대체된 후로는 차츰 公服과 黑團領을 혼동하기도 혹은 같다고 하더니 官員服의 총칭으로까지 개념이 확대되었다.

고려의 공복은 光宗 11년(959) 後周의 영향을

받고 제정했으며 형태는 右襟에 曲領이고 大袖인데 옷깃과 袖口에 異色褱이 둘러져 있고 宋制는 선이 없다. 毅宗때(1146~1170) 詳定 古今禮에서 公服 제도는 宋 神宗 元豐 원년의 제도를 따라 제정했으나 형태는 변함이 없었다.

朝鮮王朝는 공복을 國朝五禮儀에 제정하기까지 明制를 참조하는등 많은 研究를 했던 기록이 많은데 世宗의 세종실록 五禮儀를 기본으로하여 조금 첨가한 것이다. 이것이 조선말기 大典會通에까지도 제도적으로 제정은 했으나 실제로 착용된 것은 임진·병자란 전까지이다. 兩亂 이후 祭服 朝服 常服은 복구되었으나 公服만은 흑단령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國婚(嘉禮)때 主人 賓者 正使 副使와 樂人中 몇몇은 公服을 착용하기도 했으나 형태가 변했다. 즉 선이 없는 曲領大袖였던 것이 黑團領을 닮아 가다가 흑단령이 되었다. 유물은 한점도 없었지만 형태 변화를 알 수 있는 王陵의 文官石像과 典樂服飾을 고찰한 결과 ① 石像의 袍의 변화는 숙종부터 있었는데 두루막힌 무가 단령무(여분의 무가 뒤로 접혀졌고 옆트임이 있다)로 표현되었다.

典樂의 絳公服이 純祖·進饌儀軌에서는 綠團領으로 변했다. ② 幞頭의 모자는 모가 지고 脚은 옆으로 펼은 展脚복두였었는데 典樂의 모자는 둥글게 변했고 石像은 변함이 없었다. ③ 帶는 石像은 鞵이 허리 뒤로 길게 늘어지는 花紋 있는 鞵帶였고 典樂은 無紋의 烏鞵帶가 烏也帶로 불려졌다. 영조의 국혼정례에도 也字犀帶로 표현되었다. ④ 笏은 변함이 없었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가 졌다.

참 고 문 헌

- 高麗圖經 민족문화추진회 1978.
 高麗史 中 아세아문화사 1972. 영인본
 고려사절요 민족문화추진회 1977.
 權容玉 “朝鮮王朝 王陵 文人石像의 服飾形態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序例 景文社 1979. 영인본
 國婚定例 乾 규장각본
 耆社契帖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도록 (5) 1976.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1973.
 大典會通 고려대학교 1960.
 法制處編 經國大典 부산일보사 1961.

- 成倪等編 樂學軌範 고전국역총서 1982.
- 成倪等編 大東野乘 민족문화추진회 1971.
- 李康七編 名人肖像大鑑 탐구당 1972.
- 李基白編 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981.
- 李順子 “朝鮮王朝時代 樂人服에 관한 研究” 服飾 제 5 호 1981.
- 李翼 星湖僊說 제15권
-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知文閣 1965.
- 朝鮮王朝實錄 太祖, 太宗, 世宗, 文宗, 世祖, 成宗, 仁祖, 宣祖, 肅宗, 英祖, 顯宗
- 趙孝順 “正祖의 顯隆園 幸次時의 宮中儀禮服飾考” 服飾 제 5 호 1981.
- 增補文獻備考 동국문화사 1970 영인본
- 嘉禮都監儀軌 (昭顯世子嬪, 肅宗世子嬪 仁敬 王后 純祖文祖神貞后 憲宗孝定后, 純宗純明后)
- 宋史輿服志
- 大明會典
- 三才圖會